

의안번호	2215076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6.01.27.
추계번호	25C693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의5 (교육비 지원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“교육비”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<u>학생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0조의5 (교육비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
- 현행 「교육기본법」 1), 「초·중등교육법」 2)에 근거하여 초·중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, 「초·중등교육법」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일부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³⁾

1) 「교육기본법」

제8조(의무교육)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- 개정안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,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동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
 - 현재 각 시·도교육청은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 - 다만, 시·도교육청별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(두 자녀 또는 세 자녀 이상)과 지원 항목(수학여행비, 입학지원금, 방과후학습 수강권 등)이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
 - * [참고자료] 시·도별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현황
 - 개정안 시행 시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 도입되거나 기존 사업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시·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및 항목 등이 상이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(지원 대상, 단가 등)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3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60조의5(교육비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교육비"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
3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

② ~ ③ (생략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시·도별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다자녀 가정 기준	대상 학생	지원 항목	'25년 예산	'26년 예산
서울	두 자녀 이상	○ 둘째 이상	—	—	—
부산	두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교육비	55,694	53,323
대구	세 자녀 이상	○ 셋째 이상	○ 졸업앨범비 ○ 현장학습비	1,398	603
인천	세 자녀 이상	○ 셋째 이상	○ 입학지원금 ○ 현장학습비	4,620	4,842
광주	두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학생교육비	37,374	47,300
대전	세 자녀 이상	○ 둘째 이상	○ 수학여행비, ○ 현장학습비	3,844	5,007
울산	세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교복비 ○ 방과후학습비 ○ 수학여행비	2,489	6,144
세종	세 자녀 이상	○ 셋째 이상	○ 교육비	120	100
경기	두 자녀 이상	○ 둘째 이상	—		
강원	두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교육비	2,923	2,924
충북	세 자녀 이상	○ 셋째 이상	○ 방과후학습비 ○ 졸업앨범비	1,406	1,489
충남	세 자녀 이상	○ 셋째 이상	○ 교과서비 ○ 교육비 ○ 급식비 ○ 방과후학습비 ○ 수학여행비 ○ 입학지원금	2,888	2,990
전북	두 자녀 이상	○ 둘째 (두 자녀) ○ 전 자녀 (세자녀이상)	○ 교과서비 ○ 교육비	551	750
전남	세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교육비 ○ 기숙사비 ○ 입학지원금 ○ 체험학습비	12,285	11,839
경북	두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교육비 ○ 방과후과정비 ○ 졸업앨범비 ○ 현장학습비	27,442	20,388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다자녀 가정 기준	대상 학생	지원 항목	'25년 예산	'26년 예산
경남	두 자녀 이상	○ 전 자녀	○ 입학지원금	19,788	19,892
제주	두 자녀 이상	○ 둘째 (두 자녀) ○ 전 자녀 (세 자녀이상)	○ 급식비 ○ 방과후학습비 ○ 수학여행비	10,178	6,328

주: 1. 지방자치단체 단위 사업 예산만을 포함한 것임

2. 서울, 경기의 경우 조례는 존재하나 사업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자료: 시·도교육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